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신영증권㈜

2. 조치일 : 2024. 7. 12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○ 경영유의사항 7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

1 신영증권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위기상황 단계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,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및 동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·평가하고 있으나

◦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각 자금조달 수단의 독립적인 유출상황만을 가정하고 있고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점검·평가의견을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각 자금조달 수단의 복합적인 유출이 발생할 경우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

2 신영증권㈜는 조달비용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

◦ 실제 조기경보지표가 경계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도 별도 조치 없이 단순 모니터링으로 대응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므로 향후 조기경보지표가 경계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시장상황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, 동 결과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기경보지표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

3 신영증권㈜는 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위험 한도 기준을 수립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

◦ 양질의 유동성 자산 승인 관련 절차가 없고, 명확한 근거 없이 미수금 등 일부 자산을 양질의 유동성 자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유동성 자산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질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유형과 선정근거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관리할 필요

(2) 수익자지정 펀드 판매 절차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 요청에 의해 판매되는 '수익자지정' 펀드의 경우, 상품개발부서의 자체 점검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 등 유관부서의 상품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, 위험관리심의위원회 등의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

◦ '수익자지정'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세분화하고, 금융소비자보호부, 영업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통해 상품개발부서의 점검결과를 공유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수익자 지정 펀드 판매 절차를 개선할 필요

(3) 일반사모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해 '일반사모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'를 두고 있으나,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위원의 발언 등 의사경과가 기록 관리되지 않고, 리스크 점검 항목 및 평가 기준이 없어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

◦ 향후에는 안건별로 동 위원회의 의사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·관리하고, 리스크 점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

(4) 사모집합투자업무 관련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지침에서 사모펀드 운용본부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있으나

◦ 예외적 자기매매 승인시 심사 기준이 없어 본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, 승인권자인 본부장은 본인의 자기매매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어 내부통제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바, 향후에는 관련 임직원 자기매매 승인 심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자기매매 관련 승인 업무를 준법부서가 담당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

(5) 사모펀드 도입 및 승인절차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사모펀드 판매 승인시, 기초자산 및 상품구조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세분화된 검토 항목 예시가 미흡하고 그 검토근거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가 미흡하므로

◦ 향후 펀드의 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기준* 및 검토절차를 강화하는 한편, 심사내용의 유관부서(리스크관리부 등) 공유 등 관련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

* 기초자산의 특성(유동성, 연체율 등) 및 상품구조(TRS 활용 여부, 선·후순위 등) 등에 대한 세부검토 등

(6)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이후, 펀드 운용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사후관리 절차가 부재하므로,

◦ 판매한 주요 사모펀드의 실제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투자설명서상 운용전략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한편, 필요시 신규판매 중단 및 투자자 추가정보 제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내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7) 투자자정보 파악시 절차 강화

□ 신영증권㈜는 유선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시 통일된 점검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, 투자권유 직원에 따라 세부 점검항목 및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

◦ 향후 투자정보확인서의 문항을 토대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스크립트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